

국산밀산업 육성법안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960
----------	-------

발의연월일 : 2017. 12. 21.

발의자 : 이개호 · 윤영일 · 민홍철

김정우 · 김철민 · 김경협

황희 · 박정 · 김한정

위성곤 의원(10인)

제안이유

밀은 1인당 연간 소비량이 32.1kg('16년 기준)으로 양곡 중 쌀(61.9kg)
g) 다음을 차지하는 제2의 주식이나 밀 자급률은 1.8%('16년 기준)로
낮은 실정임.

국제곡물의 수급에 따른 가격 변동과 천재지변, 전쟁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국산밀 산업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음.

이에 국산밀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 공공비축밀의 운용,
음식점 등의 국산밀사용인증, 집단급식소에 우선구매 요청 등의 내용
을 포함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과 더불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산밀산업협회의 설립(안 제9조)

- 1) 국산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산밀사업자의 공동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산밀산업협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음.
- 2) 국산밀사용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국산밀의 수급조절 및 품질관리 등의 업무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산밀산업협회를 설립하고자 함.
- 3) 국산밀산업협회의 설립에 따라 국산밀의 수급이 안정되고 생산 및 수요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공공비축밀 제도의 도입(안 제10조)

- 1) 양곡부족과 천재지변, 전쟁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산밀을 비축할 필요가 있음.
- 2) 매년 일정량의 국산밀을 시장가격에 매입·비축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시장가격에 방출하는 등 적정량의 국산밀을 비축·운용하고자 함.
- 3) 공공비축밀의 비축·운용을 통해 국산밀의 생산 및 수요 기반이 확대되어 비상시에 안정적인 식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음식점 등의 국산밀사용인증 제도의 도입(안 제11조)

- 1) 국산밀은 수입밀 대비 가격 경쟁력이 낮아 음식점 등의 사용률이 저조한 문제점이 있음.
- 2) 면류전문점이나 베이커리 등에 국산밀사용인증 제도를 실시하여

음식점 등에 국산밀 사용을 장려하고 소비자에게 국산밀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것임.

3) 국산밀사용인증을 통해 음식점 등의 국산밀 사용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국산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우선구매 관련 조항의 신설(안 제13조)

1) 국산밀은 수입밀 대비 가격 경쟁력이 낮아 수요기반이 제한적이므로 생산 확대가 어려운 실정임.

2) 학교급식이나 군급식 등 집단급식소(「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급식시설을 말한다)를 운영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국산밀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하여 국산밀 수요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3) 집단급식소에 국산밀가공품 우선 구매 요청을 통해 국산밀 수요기반이 확대되어 국산밀의 수급이 안정되고 밀 자급률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국산밀산업 육성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산밀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산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산밀가공품”이란 국산밀과 국산밀가루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가공품을 말한다.
2. “국산밀산업”이란 국산밀을 재배하거나 국산밀가공품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국산밀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국산밀사업자”란 국산밀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토종종자”란 밀 품종 중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외래종과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 종자를 말한다.
5. “공공비축밀”이란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하는 밀을 말한다.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산밀사업자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산밀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 및 자급률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산밀사업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국산밀의 생산 및 국산밀가공품의 판로 확대를 통해 건전한 수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산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국산밀산업 육성 기반조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산밀 산업육성을 위하여 국산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산밀산업의 현황과 전망
2. 국산밀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국산밀의 자급률 향상과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4. 국산밀의 품종개발과 종자 보급에 관한 사항

5. 국산밀과 국산밀가공품의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6. 국산밀산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국산밀의 유통구조 개선과 국산밀가공품의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산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통계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산밀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산밀과 관련된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통계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산업의 사업자 또는 제9조에 따라 설립된 국산밀산업협회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산밀산업의 발전과 국산밀가공품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산밀의 생산에 관한 연구
 2. 품종개발 등 국산밀과 국산밀가공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국산밀을 이용한 가공품의 개발
 4. 그 밖에 국산밀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국산밀산업의 활성화 촉진

제8조(국산밀산업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산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배수로 개선, 농기계 보급 등 생산기반 조성
 2. 저장·가공시설 지원,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조금 조성 지원 등 유통·소비기반 조성
 3. 토종종자의 복원과 계승·발전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산밀산업협회의 설립) ① 국산밀사업자는 국산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산밀사업자의 공동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산밀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산밀사용인증에 관한 업무
2. 국산밀의 수급조절 및 품질관리
3. 회원 조직화 및 교육
4. 국산밀의 생산·유통·소비에 관한 조사
5. 국산밀산업 관련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거나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10조(공공비축밀의 비축·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비축밀을 비축·운용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공비축밀을 비축·운용할 때 「세계무

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③ 공공비축밀의 매입·판매가격은 매입 당시 시장가격으로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공공비축밀의 비축·운용, 시장가격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음식점 등의 국산밀사용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산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국산밀가공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음식점 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집객업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국산밀사용에 대한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산밀사용인증을 받으려는 국산밀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산밀사용인증을 받은 국산밀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인증사업자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 ④ 인증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사업자가 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 점검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국산밀사용인증의 기준·절차·방법 및 인증표시

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산밀사용인증의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1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5항에 따른 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인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같은 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3조(우선구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산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집단급식소(「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급식시설을 말한다)를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국산밀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급식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국산밀도 농산물로 볼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4조(자료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산밀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제9조에 따라 설립된 국산밀산업협회,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그 밖에 국산밀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산밀사용인증을 받은 자
2.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